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제1항중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중 '취득, 처분, 교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하여'를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의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b>  <b>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b>  <b>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b>  <b>말한다.</b></p> <p>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구가 있는 일반시는 5억원 이상, 기타 시군은 2억5천만원 이상)</p> <p>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구가 있는 일반시는 1만제곱미터 이상, 기타 시군은 5천제곱미터 이상)</p> <p>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미만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면적에 해당된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p> <p>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p> <p>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p> <p>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p> <p>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p> <p>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p>	<p><b>제4조(삭제)</b></p>

현 행	개 정 (인)
5. 분월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 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 -----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 ② (삭제)

현 행	개 정 (안)
<p><b>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 및 사용허가 와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p>	<p><b>③ (삭제)</b></p>
<p><b>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b></p>	<p><b>④ ----- .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b></p>
<p><b>&lt; 신 설 &gt;</b></p>	<p><b>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b></p> <p><b>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b></p> <p><b>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b></p>
<p><b>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b></p>	<p><b>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b></p>

현 행	개 정 (안)
<p>취득, 처분, 교환, 무상대부 또는 무상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p> <p>-----</p> <p>-----</p> <p>-----</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p> <p>-----</p> <p>-----</p> <p>-----</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1. -----</p> <p>-----</p> <p>-----</p> <p>-----</p> <p>-----,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p> <p>---</p>
<p>2. - 3. (생략)</p> <p><u>&lt; 신 설 &gt;</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p>
<p><u>&lt; 신 설 &gt;</u></p>	<p>제39조의 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p>

현 행	기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u></p> <p style="text-align: center;"><u>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u></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u></p> <p style="text-align: center;"><u>받아야 한다.</u></p>
<p>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전기요금 (단, 1급 관사에 한함)</p> <p>6. (생략)</p> <p>7. 수도요금 (단, 1급 관사에 한함)</p> <p>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관사에 한함)</p>	<p>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전기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 <p>6. (현행과 같음)</p> <p>7. 수도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 <p>8. -----</p> <p>(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